

#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 - 30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.

제출자 : 김제시장

## 1. 개정이유
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「변화와 혁신」, 「지방분권」, 「국가균형발전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과 재해·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한 읍·면 방재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
-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전담기구인 「혁신분권담당」 설치와 방재인력을 보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947인에서 959인으로 증원됨(안 제2조)
  1. 집행기관의 정원 : 939인(증 12인)
 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0인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  
[전라북도 자치행정과 - 5062(2004. 4. 27)호]
- 읍·면 방재인력 보강지침  
[전라북도 자치행정과 - 6219(2004. 5. 20)호]

#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947인”을 “959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927인”을 “939인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개정)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2항중 제27호를 제30호로 하고, 동항에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27. 혁신·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
  28. 자체혁신 및 분권에 관한 총괄·기획조정, 혁신·분권과제 발굴, 추진 상황 관리·점검 평가
  29.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·조정
- ③(경과조치)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분장 사무는 2007. 6. 30까지 한시 운영한다.



# 신,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947인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927인</u> 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959인</u> -----, ----- -----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939인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b></p>	
<p>제4조(실·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 보좌기관의 설치)</p> <p>①(생략) ②(생략) 1.~26.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27.</u>(생략)</p>	<p>제4조(실·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 보좌기관의 설치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~26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7. 혁신·분권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</u></p> <p><u>28. 자체혁신 및 분권에 관한 총괄· 기획조정, 혁신·분권과제 발굴, 추진 상황 관리·점검평가</u></p> <p><u>29.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·조정</u></p> <p><u>30.</u>(현행 제27호와 같음)</p>